

	<b>NCS기반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지침</b>	규정번호	3-3-24
		제정일자	2016.02.19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1 총페이지 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동양미래대학교 NCS기반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편(이하 “교육과정개발”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 위원회)** ① 학과는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교육과정개발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산업체 현장 전문가를 직무별로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산업체 현장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기술사,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분야 국가자격(기술사, 기능장 제외)을 취득하고 5년 이상 현장 경력이 있는 사람
3. 해당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학과의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용어정의)** ① “NCS기반 교과목”이란 교육내용에 NCS표준의 능력단위요소를 적어도 하나 포함하고 있는 교과목을 말한다.

② “NCS체계화”란 NCS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직무나 교육내용에 대해 NCS의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및 수행준거에 준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NCS체계화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자체능력단위”란 NCS체계화를 통해 도출된 능력단위를 말한다.

**제4조(교육과정 개발의 절차)** 교육과정은 다음 각 항과 같은 절차에 따라 개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항과 같은 단계별 산출물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①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외부환경 분석, 내부환경 분석 및 요구분석을 통하여 인재양성유형 설정의 기본이 되는 직업(군)을 선정한다.

1. 외부환경 분석 : 산업동향, 인력동향, 지역동향
2. 내부환경 분석 : 학과현황, 학생현황, 교원현황
3. 요구분석 : 산업체를 대상으로 필요 자격, 면허, 직업기초능력, 전공능력 등을 조사하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선호도 조사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산출물 :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 환경분석 및 요구분석 결과

② (인재양성유형 설정 및 교육목표 수립) 학과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인재의 유형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목표를 수립한다.

1. 직업(군)선정 : 상기 분석결과를 토대로 직업(군)을 선정한다.(NCS의 분류체계 활용)
2. 인재양성유형을 직업(군) 및 그 하위의 직무수준에서 정의하고 주요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인재양성유형에 맞추어 학과의 교육목표를 도출하되 대학의 비전, 교육목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산출물 : 학과의 인재양성유형(표), 학과의 교육목표, 위원회 구성목록, 위원회 회의록, 대상 직업(군) 선정표

③ (직무정의 및 NCS 분류체계 기술) 직업별 직무분야를 선정하고 그에 따른 직업기초능력과 NCS 분류체계를 기술하여야 한다. 단, NCS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직무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직무 분류체계를 정의할 수 있다.

1. 직업별 직무분야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정의하고 해당 직무에 필요한 직업기초능력을 도출한다.

2. 직무는 여러 개의 NCS 세분류들의 조합으로도 정의가 가능하다.

3. 직무정의에 따른 NCS 분류체계를 기술한다.

4. 산출물 : 직무정의, 직업기초능력 및 NCS 분류체계 도출표

④ (직무모형 설정) 기술된 NCS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직무모형을 설정한다.

1. 직무모형은 NCS 분류체계의 해당 능력단위와 능력단위요소를 모두 기술한다.

2. 여러 세분류들의 조합으로 정의된 직무는 각 세분류에서 해당되는 능력단위에 대해서 능력단위요소를 모두 기술하여 직무모형을 설정한다.

3. NCS에서 미개발된 직무가 있다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NCS체계화를 수행한다.

4.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에 대해서는 NCS 직업기초능력이 능력단위가 되며, 하위능력이 능력단위요소가 된다. 단, 수행준거는 세부요소를 바탕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자체 개발하여 추가한다.

5. 자체능력단위는 대학자체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산출물 : 직무모형표, 자체능력단위 명세서

⑤ (직무모형 검증) 직무모형으로부터 교육과정에 포함할 능력단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다.

1. 교육의 필요성, 직무 중요도, 관련 자격증 등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능력단위를 선정한다.

2. 선정된 능력단위에 대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능력단위요소들을 선정한다.

3. 선정된 능력단위요소에 대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할 수행준거들을 선정하고 미활용 수행준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유를 적시한다.

4. 산출물 : 능력단위 검증표, 능력단위요소 검증표, 수행준거 검증표

⑥ (교과목 도출) 선정된 능력단위로부터 교과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도출한다.

1. 능력단위의 내용, 크기, 타 능력단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

2. 능력단위명을 활용한 교과목명을 권장하나 그 내용을 반영한 명칭이나 직무를 고려한 명칭도 가능하다. 동일한 명칭에 특정 기호 또는 번호를 붙여 여러 교과목명을 만드는 것은 불허한다.

3. 교과목의 이수시간은 NCS에서 제시된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학습량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4. 능력단위요소에서 제시 또는 요구되는 이론을 교육할 이론 교과목의 도출은 가능하나 NCS기반 교과목으로 분류하는 것은 불허한다.

5. 산출물 : 능력단위기반 교과목 도출표

⑦ (교과목 프로파일 작성) 도출된 교과목의 주요내용을 기술하는 교과목 프로파일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교과목명, 관련 직무명,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 교과목개요,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육시수, 교수학습방법, 교육정보, 평가방법, 장비 및 도구, 관련 NCS 정보 등을 포함한다.

2. 장비 및 도구는 특히 명확하게 작성한다.
3. NCS기반 교과목에서 NCS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해당 부분을 NCS체계화하여 구성한다.
4. NCS기반 교육과정내의 모든 실습과목은 NCS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도 NCS체계화하여 구성한다.
5. 직업기초능력 교과목에 대해서도 프로파일을 작성한다.
6. 산출물 : 교과목별 프로파일

⑧ (NCS와 교과목의 연계성 기술) 도출된 교과목과 NCS 능력단위와의 연계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표기한다.

1. 도출된 교과목의 교육시기를 학년 및 학기 단위로 분류한다.
2. 교과목과 NCS 능력단위와의 연계성을 표기한다.
3. 전체 교과목에 대해 NCS기반 여부, 대학자율편성, 학습모듈 활용여부 등을 기술한 NCS적용 총괄도를 작성한다.
4. 산출물 : NCS와 교과목 연계성 표, NCS적용 총괄도

⑨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작성)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 교과목을 단계별로 연결하여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

1. 교육과정 로드맵은 각 교과목이 직무별로 구분되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직업기초능력 교과목 포함)
2. 교육과정 로드맵은 진로지도와 직무수행능력성취도 산출에 활용한다.
3. 산출물 : 직무별 교육과정 로드맵

**제5조(교육과정 개발 완료 절차)** 교육과정은 제4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모든 단계를 완료한 후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개발하여야 한다.

- ① (1차보고서 제출) 학과장은 제4조의 단계별 산출물을 모두 포함하는 “NCS기반 교육과정개발 1차보고서”를 NCS교육운영지원센터에 11월 둘째 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
- ② (평가 및 보완 요구) NCS교육운영지원센터는 NCS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1차보고서를 평가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과장에게 보완을 요청하되, 보완사항 없이 총장의 허락을 득하면 1차보고서가 “NCS기반 교육과정개발 완료보고서”로 인정되며 교육과정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③ (보완) 학과장은 NCS교육운영위원회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보완·개발하여야 한다.
- ④ (2차보고서 제출) 학과장은 보완요구사항이 반영된 “ NCS기반 교육과정개발 2차보고서”와 “보완요구사항 조치내역서”를 NCS교육운영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개발 완료) NCS교육운영지원센터는 NCS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된 2차보고서를 평가한 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총장의 허락을 득하면 2차보고서가 “NCS기반 교육과정개발 완료보고서”로 인정되며 교육과정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운영세칙)** 이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NCS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정한다. <신설 2017.9.1.>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